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09. 3. 12.), 제2009-308호('09. 8. 6.), 제2009-341호('09. 9. 10.), 제2009-517호('09. 12. 17.), 제2010-195호('10. 5. 27.), 제2010-290호('10. 8. 5.), 제2011-97호('11. 4. 21.), 제2011-186호('11. 7. 7.), 제2012-171호('12. 7. 5.), 제2012-194호('12. 7. 26.), 제2012-243호('12. 9. 13.), 제2013-111호('13. 4. 4.), 제2013-197호('13. 6. 27.), 제2014-29호('14. 1. 23.), 제2014-130호('14. 4. 3.), 제2014-284호('14. 8. 7.), 제2014-395호('14. 11. 20.), 제2017-306호('17. 8. 17.), 제2017-381호('17. 10. 26.), 제2018-172호('18. 05. 31), 제2020-156호('20. 04. 16.)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9,854.3	-	639,854.3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3) 공원 · 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변경없음)
- 4) 교통계획 (변경없음)
- 5) 경관계획 (변경없음)
- 6)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3)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15) 특성화 계획 (변경없음)
-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신정1~5촌치관리구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89,794.3 (2,032.1)	서고시 제2010-290호 (2010.08.05.)	

※ ()는 금회 사업구역 면적으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5구역임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가) 대지 내 공지 (변경없음)

(나) 대지 내 통로 (변경없음)

(다) 차량동선 (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기정	차량출입불 허구간	간선가로변
변경	차량출입불 허구간	간선가로변

※ 간선부 공동개발(권장 및 자율)시 차량출입을 이면부로 제한

※ 존치관리 5구역(신정동 1147-11에 한함)은 2020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03.17) 심의 결과(조건부가결)를 반영하여 간선도로변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계획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겠음

☐ 변경사유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양천구 신정동 1147-9 외 2필지 (공동개발 지정, 준치관리5구역)	공동개발 시 간선가로변에서 차량출입 부분허용	- 대상지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동선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 동선이 중첩되는 상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가로변에서 차량출입을 허용하고자 함 - 대상지와 이면부 도로의 단차로 인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입지여건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고자 함

(라) 환경친화적 요소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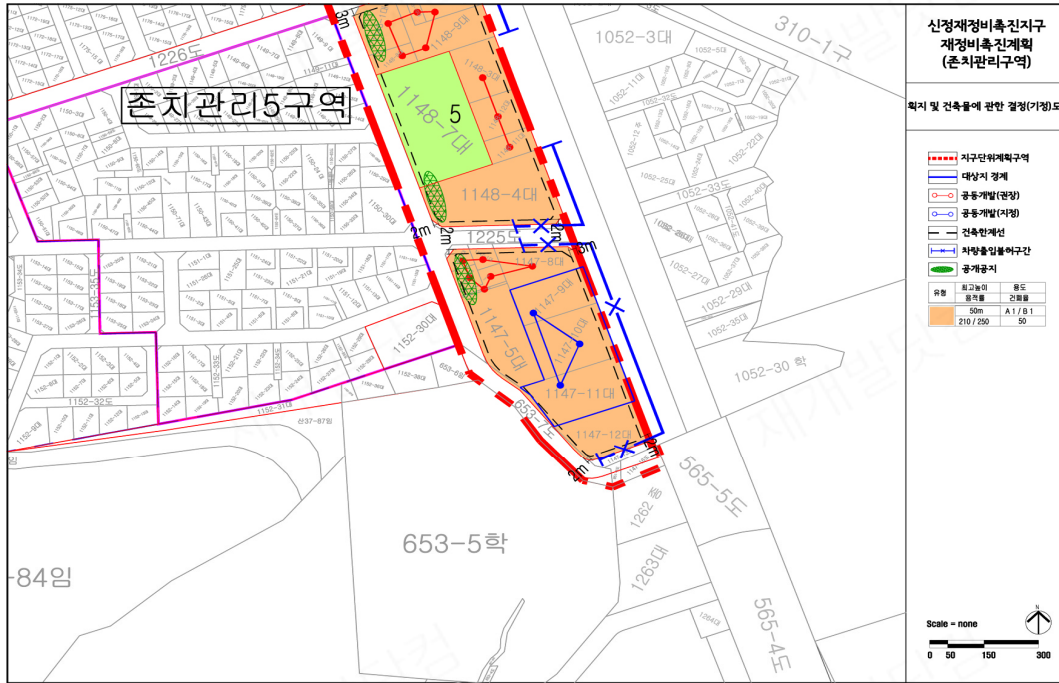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관계도면 및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9)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